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가단1376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 2024. 11. 5.

판결 선고 2024. 11. 19.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10. 접수 제49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김태균

별지